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2

제안연월일 : 2026년 11월 6일

제 안 자 : 원주영,김진희,김동훈,이진환,임영신,
이영환,김영실,백선아,박경원,한근수,
손정자,전혜연,최문광,홍성우,최정혜,
김수연,김기준,김희성,유수형,김도은,정미정

1. 주문

남양주시의회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1권역으로 지정한 획일적인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과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반영하여 남양주시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하고, 규제특례권역 신설 등 합리적인 차등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현행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여부와 인구감소 여부 등 외형적인 지표에 치우쳐 지역의 실제 경제력과 산업·고용 기반, 경제적 자족성 및 각종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시설 유치와 기업활동, 일자리 창출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물러 있음.

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기반시설 수요는 증가했으나, 중첩규제로 자족기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남양주시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1권역에 지정하는 것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우대지수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라. 이에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과 산업·고용 기반, 중첩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3권역으로 재지정하고, 규제특례권역 신설 및 실질적인 재정·정책 지원 등 합리적인 차등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3. 결의안 : 덧붙임

4. 이송처 :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문

우리는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과 발전 가능성을 외면한 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1권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과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4만 남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세제·규제·조달 정책에서 지역별 우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감소 여부 등 외형적·정형적 지표에 치우쳐 지역의 실제 경제력과 산업·고용 기반, 경제적 자족성 및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의 규제가 중첩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과 산업시설 유치, 기업활동 및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남양주시의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2,084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물러 있으며, 같은 1권역에 속한 화성시와 비교할 때 약 4.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와 기반시설 수요는 폭증했음에도 각종 중첩규제로 자족기능 확보에 제약을 받아 온 남양주시를 인구 규모와 수도권 입지만을 이유로 1권역에 지정하는 것은 지방우대지수가 지향해야 할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남양주시가 중첩규제에 따른 구조적 불이익을 극복하여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남양주시의회는 수도권 여부와 인구감소 여부 등 외형적·획일적 지표에 치우친 현행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1인당 GRDP, 산업·고용 기반, 경제적 자족성, 중첩규제 수준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1권역에 일률적으로 지정된 것은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과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외면한 불합리한 처사임을 밝히며,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과 산업·고용 기반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남양주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 보호 관련 규제 등 국가의 각종 중첩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권역」 제도를 신설하고,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과 지역발전사업 우대 등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1월 6일

남 양 주 시 의 회